

2025년도 제6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록

I 개 요

- 일 시 : 2025. 7. 22.(화) 10:00~12:20
- 장 소 : 1호관 영상회의실
- 참석현황 :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6명, 불참 4명
 - 참석위원(16명)
 - 이준한(부위원장), 허진, 안치영, 김장균, 김태성, 성영애, 김준동, 김우일, 김영균, 황문현, 김평원, 김응철, 강희찬, 이영수, 김규원, 황병희
 - 불참위원(4명)
 - 이인재(위원장), 최병조, 이승호, 이남식

II 회의결과

- 제1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 대학원장]

1. 제안사유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관하여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에서 인정하는 학점과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맞지 않아, **상위법에 의거하여**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학점인정 범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 수료학점 이상 인정 가능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편입학과와 동일/유사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학점 제한없음)
 - 유사하지 않으면 타전공학점 인정(수료학점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학점의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7조의2(편입학자의 인정학점)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과에서 심사하여 동일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을 부과하는 등의 편입학자 인정학점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 제4조(편입학자의 학점 인정) ①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7조의 2에 의해 편입학한 자의 전적 대학원 학점 인정은 본교 대학원 교육과정에 맞도록 정한 기준에 따라 서식(별표 2)을 이용하여 학과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으로 인정한다.

1. 편입학과와 개설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2. 편입학과와 개설과목과 유사하지 않은 과목은 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되, 그 학점은 동일학위과정 수료학점의 2분의 1범위내에서만 인정한다.

② 기 인정받은 교과목은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6조(편입학자의 학점 이수) ① 편입학자는 동일학위과정 수료학점에서 제4조에 의거하여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② 전적 대학원 수료(예정)자가 제4조에 따라 인정받은 전적 대학원 학점이 동일학위과정의 수료 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주요내용

-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 제4조의 편입학자학점인정 범위를 교육부 상위법에 맞게 변경
-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 편입학자 학점인정조서(별표2)의 오타 및 작성요령 수정, 필요 항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교무회의 보고 : 2025. 05. 20.(화)

○ 총장 방침 : 2025. 05. 21.(수)

○ 의견 조회 : 2025. 05. 21.(수) ~ 05. 30.(금)

○ 사전 심사 : 2025. 06. 09.(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2호 심의안건 : 2025년 인천대학교 조직 개편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기획예산처장]

1. 제안사유

- 가. 미래 인재 양성, 지역사회 기여, 산학협력 강화 등 중장기 발전 전략 실현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대학의 행정, 교육, 연구 지원조직의 효율성과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이 요구됨
- 나. 새 집행부의 비전과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처·본부·과·팀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조직이 스스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 부여
- 다. 중복·분산된 기능의 통합·관리로 시너지 효과 창출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글로벌 핵심 조직과 혁신 선도 조직의 위상을 제고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총장 명칭 변경 및 소관 처·본부 조정

- 부총장 명칭 변경: 대외협력부총장 ⇨ 기획부총장
- 기획예산처 소관: 교학부총장 ⇨ 기획부총장
- 입학본부 소관: 기획부총장 ⇨ 교학부총장

나. 처·본부 개편

- (개편 전) 6처 2본부 ⇨ (개편 후) 6처 3본부
- 교육혁신원 + 기초교육원 ⇨ 교육혁신본부
- 국제교류원 + 대외협력과 ⇨ 국제대외협력처
- 대외협력처 폐지 ⇨ 국제대외협력처(대외협력과), 기획처(홍보과),

법인이사회(법인법무과)

- 기획예산처 ⇨ 기획처(명칭 변경)

다. 처·본부 산하 ‘원’ 폐지 및 조정

- 교무처 ‘교육혁신원’ 폐지(기능 이관) ⇨ 교육혁신본부 신설
- 교무처 ‘기초교육원’ 소속 변경 ⇨ 교육혁신본부 기초교육원
- 연구처 ‘공동기지원’ ⇨ 부속기관(기획부총장 소관)
- 입학본부 ‘국제교류원’ 폐지 ⇨ 국제대외협력처로 기능 이관

라. 과·팀 개편

- (개편 전) 8과 21팀 ⇨ (개편 후) 30과 (‘과’로 일원화)
- 교무처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팀 ⇨ 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과
- 교무처 기초교육원 기초교육팀 ⇨ 교육혁신본부 기초교육원 기초교육과
- 기획평가과 ⇨ 기획조정과
- 재정예산팀 ⇨ 재정전략과
- 미래전략기획팀 + 산학협력단 전략기획실 ⇨ 연구전략혁신과
-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 ⇨ 국제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
- 대외협력처 홍보팀 ⇨ 기획처 홍보과
- 대외협력처 법인지원팀 ⇨ 법인이사회 법인법무과(독립부서)
- 입학본부 국제교류원 국제교류팀 ⇨ 국제대외협력처 국제교류과
- 국제교류원 국제교육지원팀 ⇨ 국제대외협력처 국제지원과
- 일반대학원 대학원혁신과(신설)

마. 부속기관 폐지 및 신설

- LINC사업단 ⇨ 사업 종료로 폐지
- 공동기지원 ⇨ 부속기관으로 편입
- (부속기관) AI/SW 교육원 신설

바. 센터 신설·폐지 및 조정

- 교육혁신원 ‘교육혁신센터’ 폐지 ⇨ 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과로 기능 이관

- 연구처에 ‘국책사업지원센터’ 신설
- 연구처 ‘연구윤리행정지원센터’ 명칭변경 ⇨ 연구윤리센터
- 평생교육트라이버시티에 ‘K-컬처센터’ 신설
- 융합자유전공대학 ‘창의융합교육센터’ 소속 변경
⇨ 교육혁신본부

3. 참고사항

가. 관련 자료

- 2025년 인천대학교 조직개편(안) (기획평가과-2439호/2025.07.0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추진일정

- 본부회의 보고: ‘25. 6. 30.(월)
- 교무회의 보고: ‘25. 7. 1.(화)
- 방침 수립: ‘25. 7. 2.(수)
- 규정 개정 의견조회: ‘25. 7. 2.(수) ~ 7. 8.(화)
- 규정류 개정 사전심사: ‘25. 7. 10.(목) ~ 7. 14.(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5. 7. 22.(화)
- 평의원회 및 법인이사회 심의: ‘25. 8월 중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제3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기획예산처장]

1. 제안이유

- 신임 집행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조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6조(처조직) 제①항 “대학본부에 교무처, 학생·취업처, 기획예산처, 사무처, 연구처, 대외협력처, 캠퍼스기획안전본부, 입학본부를 둔다.” 를 “대학본부에 교무처, 학생·취업처, 기획처, 사무처, 연구처, 국제대외협력처, 캠퍼스기획안전본부, 입학본부, 교육혁신본부를 둔다” 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련 자료

- 2025년 인천대학교 조직개편(안) (기획평가과-2439호/2025.07.0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추진일정

- 본부회의 보고: ‘25. 6. 30.(월)
- 교무회의 보고: ‘25. 7. 1.(화)
- 방침 수립: ‘25. 7. 2.(수)
- 규정 개정 의견조회: ‘25. 7. 2.(수) ~ 7. 8.(화)
- 규정류 개정 사전심사: ‘25. 7. 10.(목) ~ 7. 14.(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5. 7. 22.(화)
- 평의원회 및 법인이사회 심의: ‘25. 8월 중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4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기획예산처장]

1. 제안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직제 및 부서별 단위 사무를 정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외협력부총장을 ‘기획부총장’ 으로 변경 (안 제6조제1항)
- 나. 처·본부 신설 등에 따라 교학부총장, 기획부총장 소관 업무 조정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 다. 법인지원팀을 법인이사회 밑에 두고 ‘법인법무과’ 로 변경 (안 제8조)
- 라. 교무처 소속 부서변경 (안 제10조제3항)
- 마. 기획예산처를 ‘기획처’ 로, 기획평가과를 ‘기획조정과’ 로 재정 예산팀을 ‘재정전략과’ 로 변경하고, 대외협력처 홍보팀을 ‘홍보과’ 로 변경하여 기획처 소속으로 변경 (안 제12조)
- 바. 연구처 미래전략기획팀을 ‘연구전략혁신과’ 로, 연구윤리행정지원 센터를 ‘연구윤리센터’ 로 변경하고, ‘국책사업지원센터’ 를 신설 (안 제14조제3항)
- 사. 연구처 연구기획관리과, 연구윤리센터 분장사무 조정 (안 제14조제4항 및 제6항)
- 아. 국제대외협력처를 신설하고, 국제교류과, 국제지원과, 대외협력과, 한국어 교육센터, 외국어교육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 배치 (안 제15조)
- 자. 입학본부의 국제교류원 폐지 (안 제17조제2항)
- 차. 교육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교육혁신과, 기초교육원, 성과관리인증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배치 (안 제18조)
- 카. 일반대학원에 ‘대학원혁신과’ 신설 (안 제19조제7항 및 제10항)
- 타. 연구처 소속 ‘공동기기원’ 을 부속기관으로 편입하고, AI/SW 교육원을

부속기관으로 신설 (안 제20조제1항)

파. 평생교육 트라이버시티에 ‘K-컬처센터’ 신설 (안 제27조제3항)

하. 부설기관 중 융합자유전공대학 ‘창의융합교육센터’는 교육혁신본부 배치로 삭제하고, ‘교육대학원’ 교육연수원은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으로 변경 (안 제3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자료

- 2025년 인천대학교 조직개편(안) (기획평가과-2439호/2025.07.0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추진일정

- 간부회의 보고: ‘25. 6. 30.(월)

- 교무회의 보고: ‘25. 7. 1.(화)

- 방침 수립: ‘25. 7. 2.(수)

- 규정 개정 의견조회: ‘25. 7. 2.(수) ~ 7. 8.(화)

- 규정류 개정 사전심사: ‘25. 7. 10.(목) ~ 7. 14.(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5. 7. 22.(화)

- 평의원회 심의: ‘25. 8월 중

○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5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사무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기획예산처장]

1. 제안사유

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나. 사무 전결 기준 조정을 통한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

2. 주요내용

가. 대외협력부총장을 ‘기획부총장’으로 변경 (안 제3조제1항)

나. “부속기관 장” 을 “부속기관 및 처·본부 소속 하부조직의 장” 으로 변경하여, 처·본부 산하 ‘원’ 의 장을 포함 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다. “처·본부 소속 하부조직의 장” 을 “부속기관 부원장” 으로 변경하여 현행화 (안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자료

- 2025년 인천대학교 조직개편(안) (기획평가과-2439호/2025.07.02.)
-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추진일정

- 본부회의 보고: ‘25. 6. 30.(월)
- 교무회의 보고: ‘25. 7. 1.(화)
- 방침 수립: ‘25. 7. 2.(수)
- 규정 개정 의견조회: ‘25. 7. 2.(수) ~ 7. 8.(화)
- 규정류 개정 사전심사: ‘25. 7. 10.(목) ~ 7. 14.(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5. 7. 22.(화)
- 평의원회 심의: ‘25. 8월 중

○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6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공간조정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캠퍼스기획안전본부장]

1. 제안이유

가.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간조정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2. 주요내용

가. 공간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교학부총장에서 대외협력부총장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05.26.(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06.17.(화)

○ 총장 방침 : 2025.06.19.(목)

○ 의견 수렴 : 2025.06.20(금) ~ 06.26(목)

○ 사전 심사 : 2025.07.09.(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7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공간관리시행지침일부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 캠퍼스기획안전본부장]

1. 제안이유

가. 공간조정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수 개인에게 부과되는 초과공간사용료의 감면기준 신설

나. 신설 학과(부)의 공간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

다. [별표1] 오기 정정, [별표3, 4] 표 수정 및 문구 삭제

라. [별표3] 자연계열(수학과 제외)의 실험실습실 학생1인당 좌석 기준면적 상향조정(8.16→9.6㎡)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2024년도 제1차 공간조정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3명 초과 대학원생 1인당 연구용실험실의 초과 면적 5㎡ 감면
(대상: 전일제 석·박사과정, 전일제 박사수료생)
 - 3,000만 원 초과 간접비 200만 원당 연구용실험실의 초과 면적 1㎡ 감면
(전년 10월~ 해당연도 9월까지 산학협력단으로 납부된 간접비)
- 2024년도 제2차 공간조정위원회 심의: 수정 가결
 - 자연계열의 공학계열 지원(물리, 화학 등 교양수업 진행) 고려 ⇒ 실험실습실 학생1인당 좌석 기준면적 공학계열(9.6㎡)과 동일 적용
- 2025년도 제1차 공간조정위원회 심의
 - (수정가결) 신설 학과(부)의 공간사용료 6년간 면제
 - (원안가결) [별표 1] 오기 정정, [별표 3, 4] 표 수정 및 문구 삭제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05.26.(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06.17.(화)
 - 총장 방침 : 2025.06.19.(목)
 - 의견 수렴 : 2025.06.20(금) ~ 06.26(목)
 - 사전 심사 : 2025.07.09.(화)
- 심의결과 : 보류

2025년도 제6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결과

| 구 분 | | 안 건 명 | 심의결과 |
|-----|-----|--------------------------------|---------|
| 심 의 | 6-1 |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 안 가 결 |
| | 6-2 | 2025년 인천대학교 조직개편안 | 수 정 가 결 |
| | 6-3 | 인천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원 안 가 결 |
| | 6-4 |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수 정 가 결 |
| | 6-5 | 인천대학교 사무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수 정 가 결 |
| | 6-6 | 인천대학교 공간조정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원 안 가 결 |
| | 6-7 | 인천대학교 공간관리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보 류 |

2025년 제6차 교육연구위원회 서명부

1. 일 시 : 2025. 7. 22.(화) 10:00
 2. 장 소 : 대학본부 5층 영상회의실

| 연번 | 구분 | 직위 | 성명 | 서명 |
|----|------|------------|-----|---|
| 1 | 위원장 | 총장 | 이인재 | |
| 2 | 위원 | 교학부총장 | 최병조 | |
| 3 | 부위원장 | 대외협력부총장 | 이준한 |  |
| 4 | 위원 | 대학원장 | 허진 |  |
| 5 | 위원 | 인문대학장 | 안치영 |  |
| 6 | 위원 | 자연과학대학장 | 김장균 |  |
| 7 | 위원 | 사회과학대학장 | 김태성 |  |
| 8 | 위원 | 글로벌경영대학장 | 성영애 |  |
| 9 | 위원 | 공과대학장 | 김준동 |  |
| 10 | 위원 | 정보기술대학장 | 김우일 |  |
| 11 | 위원 | 경영대학장 | 김영균 |  |
| 12 | 위원 | 예술체육대학장 | 황문현 |  |
| 13 | 위원 | 사범대학장 | 김평원 |  |
| 14 | 위원 | 도시과학대학장 | 김용철 |  |
| 15 | 위원 | 생명과학기술대학장 | 이승호 | |
| 16 | 위원 | 교무처장 | 강희찬 |  |
| 17 | 위원 | 학생·취업처장 | 이영수 |  |
| 18 | 위원 | 기획예산처장 | 김규원 |  |
| 19 | 위원 | 연구처장 | 황병희 |  |
| 20 | 위원 |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 이남식 | |